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6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6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20. 2.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과세목록 가산금란 기재 각 가산금의 취소 청구부분 및 별지 1 과세목록 순번 5 기재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1,980원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4. 6. 원고에게 한 별지 1 과세목록 순번 6 기재 취득세(가산세포함) 40,364,23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포함) 3,722,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6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6. 원고에게 한 별지 1 과세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골프장 운영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12.경부터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39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토지에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한 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 등의 매수에 따른 취득세 신고

1) 순번 17토지 및 B(이하 이를 통틀어 '제1과세대상 토지'라 한다)

가) 원고는 2014. 3. 13. C로부터 제1과세대상 토지를 매수하면서 C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액을 제1과세대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가 제1과세대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제1과세대상 토지에는 제1과세대상 토지 등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조합,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1. 20.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 설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6

등기를 말소하였고,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다음 표의 112,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일자	적요	거래처	차변
2015. 1. 20.	제1과세대상 토지 매입 시 담보대출 상환	D조합	112,000,000원

2) 순번 8, 9, 10, 27, 33, 35, 36, 37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제2과세대상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15. 1. 20. E으로부터 제2과세대상 토지를 매수하면서 E에게 8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300,000,000원을 제2과세대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3) [redacted]군 F, G토지 중 4521/27120지분(이하 이를 통틀어 '제3과세대상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15. 8. 4. H로부터 제3과세대상 토지를 매수하면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그 외 부대비용으로 187,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80,187,000원을 제3과세대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4) 경북 청도군 F, G토지 중 4521/27120지분(이하 이를 통틀어 '제4과세대상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15. 11. 6. I로부터 제4과세대상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대금으로 100,000,000원, 분묘이장비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그 외 부대비용으로 161,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80,161,000원을 제4과세대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5) 순번 제23토지 중 59/64지분(이하 '제5과세대상 토지'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6

원고는 2015. 11. 17. J로부터 제5과세대상 토지를 매수하면서 65,000,000원을 지급하였고(그 외 부대비용으로 137,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52,137,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1) 원고는 2016. 4. 7.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을 받았고, 2016. 4.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골프클럽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2016. 6. 27.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에 따른 가액증가로 인한 취득세로 11,202,079,393원을 신고하고 2017. 3. 15. 이를 납부하였다.

라.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 등

1) [redacted]북도는 2017. 1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제1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제2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550,000,000원(850,000,000원 - 300,000,000원)을, 제3, 4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각 20,000,000원을, 제5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13,000,000원을,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1,569,371,569원을 각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3. 위와 같은 통보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6

부과하겠다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 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2. 26. 그 청구가 불채택되었다.

3) 피고는 2018. 4. 6. 제1 내지 5과세대상 토지 및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에 대하여 별지 1 과세목록 기재와 같이 각 취득세(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 고지하였고(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당시 납부기한인 2018. 4. 30.까지 위 각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각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

4) 한편 피고는 2019. 9. 17. 제5과세대상 토지의 취득일자가 2015. 11. 17.임에도 2015. 11. 6.로 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한 오류를 발견하고 제5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720원,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90원 합계 1,980원을 감액하였다(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4, 15,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과세목록 기재 각 가산금 취소청구 및 별지 1 과세목록 순번 5 기재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98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각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6

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지방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4. 6.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를 한 사실만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위 납부기한 경과 후에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별지 1 목록 기재 각 가산금에 대하여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9. 9. 17. 제5과세대상 토지의 취득일자가 2015. 11. 17.임에도 2015. 11. 6.로 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한 오류를 발견하고 해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6

가산세 1,980원을 감액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별지 1 과세목록 순번 5 기재 부과처분 중 감액된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98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과세대상 토지의 매수로 인한 취득가액에 관하여

제1과세대상 토지는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해 둔 토지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채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환액을 제1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채무인수액으로 보아 제2과세대상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제2과세대상 토지의 매수로 인한 취득가액 관하여

원고가 2015. 1. 20. E에게 지급한 850,000,000원 중 550,000,000원은 제2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제2과세대상 토지 위에 있던 건물 및 과실수, 정원수(이하 '이 사건 건물 및 과실수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및 과실수 등에 대한 보상금을 제2과세대상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제2주장).

3) 제3, 4, 5과세대상 토지의 매수로 인한 취득가액에 관하여

원고는 제3, 4, 5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 4, 5과세대상 토지 위에 있던 분묘의 이장 · 보상비 명목으로 H, I에게 각 20,000,000원, J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분묘의 이장 · 보상비를 제3, 4, 5과세대상 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6

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제3주장).

4)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증가에 대한 취득가액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보유하고 있고 2016. 4. 7.경 이 사건 골프클럽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1]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2016. 4. 7. 당시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에는 원고의 소유가 아닌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골프클럽 조성공사도 완료되지 않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에 관한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제4주장).

나. 관계 규정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는 해당 물건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액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1과세대상 토지가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역시 원고의 채무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 3주장에 관한 판단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

1) 피고는 2016. 4. 7.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에 대하여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6

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E에게 제2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이 사건 건물 및 과실수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550,000,000원, 제3, 4, 5과세대상 토지 위에 있던 분묘의 이장 · 보상비 명목으로 H, I에게 각 20,000,000원, J에게 1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거래 직후 작성된 원고의 회계장부(계정별 원장)에는 이 사건 건물 및 과실수 등에 대한 보상금, 분묘의 이장 · 보상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모두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골프클럽 조성을 위해 매입한 다른 토지들의 경우 토지 매매대금과 분묘 이전 · 보상비가 구분되어 회계처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I에게 지급한 대금 중 50,000,000원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소명하여 분묘의 이장 · 보상비로 인정받았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던 2018. 2.경에서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계처리를 수정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수정한 근거자료가 없거나 미비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3 내지 5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할 당시 H, I, J에게 각 지급한 100,000,000원, 100,000,000원, 65,000,000원에는 이 사건 건물 및 과실수 등에 대한 보상금, 분묘 이전 · 보상비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2, 3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4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6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경우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등 참조).

나)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7조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6. 4. 7.까지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 중 순번 3, 4, 11, 12, 13, 14, 16, 20, 21, 24, 29, 30, 31, 32, 38, 39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 원고가 순번 2, 5, 6, 7, 8, 9, 10, 15, 17, 18, 19, 22, 23, 25, 26, 27, 28, 33, 34, 35, 36, 37토지는 2016. 4. 7. 이전에 이미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에 의하여 주식회사 K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2016. 4. 7. 당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와 별개로 2016. 4. 7. 당시 원고는 위 각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토지의 가액 증가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7. 당시 순번 1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순번 1토지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1 과세목록 순번 6 기재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제4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과세목록 기재의 각 가산금의 취소 청구부분 및 별지 1 과세목록 순번 5 기재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1,980원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별지 1 과세목록 기재의 각 취득세(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6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6

별지 1

과세목록

순번	과세대상 토지	세목	세액(원)	가산금	합계
1	[redacted]군 L 외 1필지[2]	취득세(가산세 포함)	6,805,560	204,160	7,991,940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635,750	19,070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317,870	9,530	
2	[redacted]군 M 외 7필지[3]	취득세(가산세 포함)	31,341,200	940,230	36,783,740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2,914,120	87,420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457,060	43,710	
3	[redacted]군 F 외 1필지 중 4521/27120지분[4]	취득세(가산세 포함)	1,092,640	32,770	1,281,840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101,260	3,030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50,630	1,510	
4	[redacted]군 F 외 1필지 중 1507/9040지분[5]	취득세(가산세 포함)	1,070,560	32,110	1,255,690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99,050	2,970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49,520	1,480	
5	[redacted]군 N[6]	취득세(가산세 포함)	695,860	20,870	816,190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64,380	1,930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32,190	960	
6	[redacted]군 O 외 38필지[7]	취득세(가산세 포함)	40,364,230	1,210,920	45,409,360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3,722,540	111,670	
합계 93,538,760원					

2) 뒤에서 보는 제1과세대상 토지를 의미한다.
3) 뒤에서 보는 제2과세대상 토지를 의미한다.
4) 뒤에서 보는 제3과세대상 토지를 의미한다.
5) 뒤에서 보는 제4과세대상 토지를 의미한다.
6) 뒤에서 보는 제5과세대상 토지를 의미한다.
7)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를 의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6

별지 2

부동산 목록

순번	토지	2016. 4. 7. 기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여부
1	[redacted] O	소유권 취득
2	[redacted] G	신탁재산
3	[redacted] P	미취득
4	[redacted] Q	미취득
5	[redacted] R	신탁재산
6	[redacted] S	신탁재산
7	[redacted] T	신탁재산
8	[redacted] U	신탁재산
9	[redacted] V	신탁재산
10	[redacted] W	신탁재산
11	[redacted] X	미취득
12	[redacted] Y	미취득
13	[redacted] Z	미취득
14	[redacted] AA	미취득
15	[redacted] AB	신탁재산
16	[redacted] AC	미취득
17	[redacted] L	신탁재산
18	[redacted] AD	신탁재산
19	[redacted] AE	신탁재산
20	[redacted] AF	미취득
21	[redacted] AG	미취득
22	[redacted] AH	신탁재산
23	[redacted] N	신탁재산
24	[redacted] AI	미취득
25	[redacted] AJ	신탁재산
26	[redacted] AK	신탁재산
27	[redacted] AL	신탁재산
28	[redacted] AM	신탁재산
29	[redacted] AN	미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6

30	[redacted]AO	미취득
31	[redacted]AP	미취득
32	[redacted]AQ	미취득
33	[redacted]M	신탁재산
34	[redacted]AR	신탁재산
35	[redacted]AS	신탁재산
36	[redacted]AT	신탁재산
37	[redacted]AU	신탁재산
38	[redacted]AV	미취득
39	[redacted]AW	미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6

별지 3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6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